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375 |
|----------|------|

제출년월일 : 2005. 9. .
제출자 : 안산시장

제안이유

- 안산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 안산시 평생학습위원회와 안산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시민과 함께 평생토록 성장하는 교육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평생학습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5조).
- 나.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내지 제8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135조
- 평생교육법 제9조
-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05. 8. 19 ~ 2005. 9. 8(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주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개발 추진한다.
③ 시장은 시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3조 (평생학습위원회 설치구성) ①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평생학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시와 교육청의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의 장,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산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
4.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동아리 지원
5.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탁 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9조 (공동추진 등)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실·과 | | 자치 행정과 |
|-------------|----------------|-------------------|
| 입 안 자 | 실·과장 직위·성명 | 자치행정과장 임 철 응 |
| | 담당·팀장 직위·성명 | 교육지원담당 김 종 인 |
| | 담당자 성명·전화 | 김 태석 (행정 3454)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

- 제135조 (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 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

-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비용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